

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2021.4.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본원은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곡길5 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 (직원의 조직) 본원의 직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며 원장(초등학교장이 유치원장을 겸임), 원감(초등학교 교감이 유치원 원감 겸임), 학급당 1교사를 두며, 방과후 운영 시에는 정교사 1명 외에 방과후전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들을 감독하며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

④ 방과후전담사는 방과후과정반 활동을 전담하며 특성화활동 운영시 유아를 지원하고 교실 정리정돈 및 청결은 교육과정 담당교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조직)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교원위원1인, 유치원학부모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장 교육연한, 교육일수, 휴업일

제7조 (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8조 (학기)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수업일수 등)

①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의거하여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1항·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등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사유해 해당한다.

2.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연간 30일이며,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체험일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체험 후 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하루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 4~5시간 운영하고,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하나 학부모의 동의하에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교육부가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원격수업 포함)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휴원일) 본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② 개교기념일 : 4월 1일

③ 여름·겨울방학과 학기말의 휴가

④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거 원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기 주도 학습의 날로 정하여 휴원할 수 있다.

⑥ 휴원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성과 학급정원

제11조 (학급편성) 본원은 1학급으로 편성하며 방과후과정 1학급을 포함한다.

제12조 (원아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1학급 18명(만3-5세 혼합연령)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제 13조(교육과정)

①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원장이 지역의 특수성과 유치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운영한다.

② 유치원의 교육활동은 유아의 연령, 발달 정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을 통합하여 놀이중심으로 운영한다.

제6장 생활지도

제14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5.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6. 그 밖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16조(조언 및 상담)

-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할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의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주의 및 훈육)

-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 및 수업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
- ③ 원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 ④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⑤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물품
-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입·퇴학, 수료 및 졸업

제19조(입학)

-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② 입학 전형은 당해 학년도 원아모집 규정에 의한다.
- ③ 입학 시기는 당해 학년도 11월말까지로 하며, 인가 정원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전입)

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퇴학)

- ①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석한 때
 2. 질병 및 기타사유로 본인 및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제22조(수료 및 졸업)

-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 ③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2/3이상 이수하고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3, 4세 유아와 중도 입학, 휴학 등으로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2/3 미만인 만5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8장 수업료 및 기타징수비용

제23조 (수업료와 입학금) 본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기타비용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특성화수업비용 및 졸업앨범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장 재정

제25조 (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교육청의 지시에 따른다.

제9장 규칙개정절차

제27조(규칙개정)

- ① 규칙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칙개정은 학교장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규칙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20일이상 공고한다.
- ④ 개정시 법령(법, 조례, 지침 등)범위 내에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